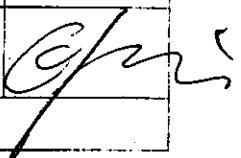


문서번호	의회 13130~152	기 안	전문위원	간 사	위원장
보존기간	영구	★ 김철수	김철수		
보고일자	PP. 7.	협 조			

1999. 7. 14(수)

제천시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총무위원회

제천시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7. 1 제천시장
- 나. 회부일자 : 1999. 7. 3
- 다. 상정일자 : 1999. 7. 8(제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경지정리 사업으로 법정리의 경계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덕산면 도전리 일부 → 선고리로
- 9필지 $3,197m^2$
- 덕산면 선고리 일부 → 도전리로
- 5필지 $743m^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법적검토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에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

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조례에 위임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행정적검토

갈지(之)자형으로 구불구불했던 리의 경계가 경지정리 사업으로 곧게 평점에 따라 리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으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담별 요지

“없음”

5. 소수의견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